

● 제284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
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
2018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시장발의 】

의안번호 208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시장
- 나. 제안일 : 2018. 10. 17.
- 다. 회부일 : 2018. 10. 29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「사회보장기본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1항을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1항으로 변경함(안 제1조)
- 나.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관련 법률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으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현행화

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3조제2항제1호)

다. 인용된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, 두 개의 조항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다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8. 7. 26. ~ 8. 16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「사회보장기본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목적조항에서 인용한 법률 변경(안 제1조)

- 안 제1조는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 제1항을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

용어의 재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제1호, 제2호 및 제3호는 ‘복지정보시스템’을 정의한 용어의 재정의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

목적조항에서 인용한 법률 변경(안 제3조제2항)

- 안 제3조제2항제1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등의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관련 법률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으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하고자 하는 것임.

- 안 제3조제2항제2호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을 신설한 규정으로써 근거법률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규정을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

□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 규정 및 개선조치 마련(안 제6조제4호)

- 안 제6조제4호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개선조치를 위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있을지도 모르는 침해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으로 신설조항은 필수적 조항으로 사료됨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인용된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, 두 개의 조항에 중복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타당하며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.
- 또한,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을 근거법률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근거한 신설한 규정을 마련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개선조치를 위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있을지도 모르는 침해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으로 마련하는 등

본 개정안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
※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성도

참 고 1

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성도

